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515809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고 1. A

2. B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택

담당변호사 강길복

변론 종결 2018. 9. 19.

판결 선고 2018. 10. 1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4,218,836원 및 그 중 90,651,821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6. 7.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7. 15. 접수 제326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7. 2. 22.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2. 23. 접수 제28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 3항 및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2017.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73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4. 22. 피고 A(E라는 사업체 운영)과, 신용보증금액 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4. 22.부터 2017. 4. 21.까지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4.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과 그 지연배상금,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과 그 지연배상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A은 2017. 2. 27. F에 대한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F은 2017. 3. 14.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였다.
- 2)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에 합계 90,651,821원(=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 2017. 3. 14.부터 2017. 6. 7.까지의 이자 651,8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3)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위약금은 231,780원이고,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3,353,340원을 지출하였다가 그중 18,105원을 회수하여 3,335,235원(= 3,353,340원 - 18,105원)의 채권보전비용이 남아 있다.
- 4)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이하 위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A의 부동산 처분

- 1) 피고 B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피고 A은 2016. 7. 15. 여동생인 피고 B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7. 15. 접수 제32607호로 2016. 7.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피고 C에게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피고 A은 2017. 2. 23. 남동생인 피고 C에게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8470호로 2017. 2. 22.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3) 피고 D에게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피고 A은 2017. 2. 28. 피고 D에게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7391호로 2017. 2.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의 2016. 4. 15.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H 소유의 안성시 I답 985㎡와 공동담보),

실제 피담보채무는 35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94,218,836원(= 이 사건 신용보증 대위변제금 90,651,821원 + 위약금 231,780원 + 채권보전비용 잔액 3,335,23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0,651,82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7. 8. 29.까지는 위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 J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용인시청 및 안성시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별지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 행위 당시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각 처분 행위 이전에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피고 A과 F 사이의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②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신탁계약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4일 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한편,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17. 2. 27.로부터 약 7개월 20일 가량 이전인 2016. 7. 6.에 체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2016. 7. 6. 기준으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별지1, 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648,251,800원 상당(= 별지1목록 기재 1부동산 80,000,000원 +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 430,000,000원 + 별지3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의 공시지가 72,885,800원 + 별지3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의 공시지가 65,366,000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F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금 채무 100,000,000원, F(본부총괄)에 대한 채무 348,955,000원(2013. 4. 3. 발생),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605,493,000원(2012. 8. 9. 발생),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K조합에 대한 채무 32,000,000원(2014. 7. 5. 발생),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2016. 4. 15. 발생), L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8,042,000원(2012. 4. 25. 발생) 등 합계 1,444,490,000원 외에도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 A은 위 2016. 7. 6.부터 3개월 보름 가량이 경과한 2016. 10. 21.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M으로부터 281,000,000원을 대출받았음에도 2017. 2. 27.경 F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피고 B과의 매매계약 당시에 채무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③ 실제로 2017. 2. 27. 피고 A이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써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그 뒤 2017. 6. 8. F에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사후 구상금 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도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등 별지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B, C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피고들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A으로서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이에 대한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하고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2,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뿐 피고 A의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A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4. 12.부터 2016. 6. 31.까지 피고 A에게 합계 47,000,000원을 송금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이 피고 A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피고 A이 그 소유의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여러 채권자들 중 여동생인 피고 B에게 사실상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나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신탁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 C은 피고 A에게 각 별지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실제 피담보채무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중 위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물상보증인 N의 토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N가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 소유의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위 350,000,000원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이 법원의 감정축탁결과(조사기간 2018. 4. 16. ~ 4. 23.)에 의하면 2017. 2. 28. 현재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370,274,000원(= 가항 기재 부동산 185,114,800원 + 나항 기재 부동산 185,159,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 A이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객관적으로는 위 시가감정평가액과 피담보채무의 차액 20,274,000원에 해당하는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올라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될 경우 통상의 경우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5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 A이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그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350,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피고 D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의뢰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실시되었는데, 그 감정결과 2017. 3. 28. 현재 위 부동산의 시가가 311,108,000원(= 가항 기재 부동산 154,364,000원 + 나항 기재 부동산 154,744,000원)으로 평가되었고, 피고 D은 그 소유의 과수원 3필지까지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수 있었던 점, 위 부동산의 2017. 1. 1. 기준 공시지가가 145,251,000원(= 가항 기재 부동산 76,416,600원 + 나항 기재 부동산 68,834,4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위 부동산의 시가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50,000,000원 이하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위 부동산의 매도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해짐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D이 그 소유의 부동산 3필지까지 공동담보에 추가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점, 피고 D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7. 6.경 124,000,000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위 부동산 주변에 보강토 옹벽쌓기 부지조성공사까지 시행한 점[을라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역시 위 매매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부동식

별지